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314 발의연월일: 2023. 1. 3.

발 의 자: 안규백·강득구·김교흥

김수흥・김정호・도종환

류호정 • 박덕흠 • 박성준

신동근 • 이상헌 • 이용빈

조명희 · 조수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,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,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 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.

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·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 공개를 통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당사자가거부하면 과거 사진을 활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.

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 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정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	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
	굴을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를
	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공
	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	③ 제1항 및 제2항
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	
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	
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